

대구대학교와 공군방공포병학교간 학군 협력 합의서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대구대학교(이하 '갑'이라 함)와 공군방공포병학교(이하 '을'이라 함)간에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한 학군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양 당사자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갑'과 '을'의 장은 이 합의서에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3조(협력활동)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강 등 필요에 의한 상호 인적 교류
2. 학사편입 지원
3.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4. 정보통신대학 및 정보통신연구소와 상호기술 공동개발
5. 각종 행사시 시설 이용
6. 기타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연구활동) '갑'과 '을'은 관련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교육교재 개발, 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합의서 추진에 수반되는 기타 세부사항들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수정)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8조(보관) 이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6. 7. 24.

대구대학교

공군방공포병학교

이 용 두
총 장 이 용 두

주 형 립
교 장 주 형 립